

## 2013. 7.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

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3. 7. 1일을 기준으로 분할·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·공시하오니,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. 10. 31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

### 1.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

가. 대 상

- 2013. 7. 1기준 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(1,894필지)

나. 결정내용 : 필지별  $m^2$ 당 가격

다. 결정내용 열람

- 서구청 토지정보과

-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(<http://www.onnara.go.kr/>)

### 2. 이의신청

가. 대 상 : 결정·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

나. 신청기간 : 2013. 10. 31 ~ 11. 29.

다. 신청인 :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

라. 제출서류 :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(구 토지정보과, 각 동 주민센터 비치)

※ 서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eo.incheon.kr/>) ⇒ 「민원서식」란에 게재

마. 접수처 : 서구청 토지정보과

바. 접수방법

- 방문접수, 우편접수(마감일인 2013년 11월29일 까지 소인분에 한함) 및  
민원24 홈페이지(<http://www.minwon.go.kr/>) 접수

사.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

-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  
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

### 3. 문의사항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(☎ 560-4840)로 문의하  
기 바랍니다.